

## (재)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14:00~14:40
- 회의장소 : 교구청 5층 사목상황실(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 임원명단(이사 6명)  
대표이사 - 김선태  
이 사 - 김창신, 김경수, 오성기, 이정현, 이훈
- 참석인원(이사 4명)  
대표이사 - 김선태  
참석이사 - 김창신, 김경수, 오성기
- 안건

### 1)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승인'

김선태 대표이사 :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센터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기 이사 :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은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경수 이사 : 재청합니다.

김선태 대표이사 : 네, 다른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이사 '예'하고 대답하다.)

김선태 대표이사 : 두 분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 이사 동의하다)

김선태 대표이사 :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의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금176,396천원 세출 금176,396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2)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변경(안) : '승인'

김선태 대표이사 :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변경안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책자의 부록에 있는 운영규정의 내용에 추가된 부분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용어 변경

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이사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참조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창신 이사 : 재청합니다.

김선태 대표이사 : 네, 다른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이사 '예'하고 대답하다.)

김선태 대표이사 : 두 분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 이사 동의하다)

김선태 대표이사 :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의 운영규정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언합니다.

● 결의사항

1)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 : 세입 금176,396천원 세출 금176,396천원

2)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변경(안) '승인' : 내용 별첨

●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폐회



이사회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차기 이사회 일정을 안내하다.

( 영광송과 주교님 강복으로 회의를 마치다. )

(마침시간 14:40)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임원이 서명·날인함.

2024. 9. 27.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대표이사

김 선태



이 사

김 창 신



이 사

오 성 기



이 사

김 경 수



# 2024년도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변경(안)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제1장 총칙				
1	제7조	<신설>	(특별사안) 특별한 사안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경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예산총칙 명확화
2	제9조	<신설>	(사회복지윤리기준 준수) 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정하도록 사회복지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반영
제3장 이용아동의 인권보장				
3	제27조	<신설>	(학대금지 및 처벌규정) 1. 본 센터는 원칙적으로 학대를 금지한다. 2. 위배시 즉각적으로 책임자(시설장)에게 보고해 할 의무가 있다. 3. 학대에 관련된 일이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가해 혐의자에게는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사실 확인을 명백하게 밝혀 혐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4.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회복을 위한 병원, 심리상담소 등에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설명회 자료 집
제4장 개인정보보호 규정 <신설>				
4	제29조	<신설>	(개인정보보호) 1. 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설명회 자료 집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p>2. 센터 이용 아동 및 보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때 수집항목 및 활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아동 및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p> <p>3.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p> <p>4. 센터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5. 센터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는 개인별로 정리하고 잠금장치를 한 공간에 보관·관리한다.</p> <p>6. 센터에서 수집된 이용 아동의 정보 및 기록 등에 대한 열람은 <u>법정종사자로 제한하며, 법정종사자는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 의무가 있다.</u></p>	
5	제30조	<p>&lt;신설&gt;</p> <p>1.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정보제공</p> <p>1.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p> <p>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할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 하고, 모금 및 홍보를 위한 자료라도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p> <p>3. 종사자와 이용자의 사진, 영상, 초상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p> <p>4.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p>	<p>2024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설명회 자료집</p>	
6	제31조	<p>&lt;신설&gt;</p>	<p>(개인정보 보관, 열람 및 권한제한)</p> <p>1. 개인정보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p>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7	제32조	<신설>	<p>2.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고, 개인정보파일은 잠금장치를 한 별도의 공간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은 시·군·구에 입면 보고된 변경종사자로 제한하고, 결정 권한은 시설장에게 둔다.</p> <p>(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리 방침)</p> <p>1.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3.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제6장 인사규정				
8	제34조	제27조(시설의 장 등) 1.2.3.4.5.6.(생략)	7. 센터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며, 시스템 사용의 권한은 해당 시·군·구에 입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한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설명회 자료집
9	제42조	제35조(구비서류) 1.2.3.4.7.8.9.10.11(생략)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서 6.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입면시 구비서류 추가
제7장 복무규정				
10	제48조	<신설>	<p>(포상 및 징계)</p> <p>1. 종사자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및 징계한다. 가. 징계사유</p> <p>(1) 센터의 제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p> <p>(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p> <p>(3)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에 손실을 끼쳤을 때</p> <p>2. 포상은 표창, 부상, 포상휴가로 구분하며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p>	근로기준법 포상, 징계 기준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p>가. 해고 사유</p> <p>(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 운영 질서나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한 경우에 해고 할 수 있다.</p> <p>(2)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p> <p>나. 해고의 예고</p> <p>(1) 종사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통고하여야 한다.</p> <p>(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 없이 해고 할 수 있다.</p> <p>3.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야만 한다.</p> <p>4. 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사 및 의결한다.</p>	
11	제56조	<p>&lt;신설&gt;</p>	<p>(건강검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사자의 건강을 위하여 연1회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하며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2.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li> <li>3.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조치를 취하여, 종사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li> <li>4. 종사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li> <li>5. 모든 종사자는 센터 사업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li> </ol>	<p>시군구 점검시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화</p>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제8장 업무수행				
12	제62조	<p>1. 나.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센터중앙지원단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한다. 제67조</p> <p>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한하여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생략)</p> <p>&lt;신설&gt;</p>	<p>1. 나.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동관리보장원, 시군구 등)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 제공된다.</p> <p>5.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한하여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생략)</p> <p>6. 문서의 보존기간</p> <p>가.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는 계속 보관</p> <p>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예산서 및 결산서, 회계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p> <p>다. 문서별 보관·비치 기간(표참조)</p> <p>라. 자체서식 및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이용아동 및 종사자보고, 후원금 수입 등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p>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용어변경
13	제66조		<p>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예산서 및 결산서, 회계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p> <p>다. 문서별 보관·비치 기간(표참조)</p> <p>라. 자체서식 및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이용아동 및 종사자보고, 후원금 수입 등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p>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문서보존기간 추가 용어변경
제9장 보수규정				
14	제68조	<p>제39조 (보수의 구분) 센터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여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센터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p>	<p>제68조 (보수의 구분) 센터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여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p>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용어변경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변경사유
		결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15	제79조	<p>제72조(회계의 투명성)</p> <p>2. 센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생략)</p> <p>9.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 지시 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생략)</p> <p>1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 스 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 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 록하고.....(생략)</p>	<p>제79조(회계의 투명성)</p> <p>2.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 .....(생략)</p> <p>9.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서비 스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생략)</p> <p>10.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 희망이음)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생략)</p>	<p>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용어변경</p>